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0월 8일, 이창열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4년 10월 14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10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창열 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 군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안 제6조)
- 업무 등의 위탁(안 제8조)
-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1]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창열 의원
- 제안일자 : 2024. 10. 8.
- 회부일자 : 2024. 10. 14.
- 상정일자 : 2024. 10. 14.

2. 제안이유

- 우리 군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안 제6조)
- 업무 등의 위탁(안 제8조)
-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10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제4항에서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 지자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에서 우리 군의 가족돌봄 청소년 대상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¹⁾로 명시함.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안 제6조(지원사업)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 >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안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에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에게는 지원을 제한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함.

5. 종합검토의견

- 지자체는 청소년들에게 복지와 교육 등을 제공할 책무를 가지고 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까지 떠맡아 본인의 학업 등을 포기할 위기에 처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고, 자치사무로써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합당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사업 주요 내용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 제2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사업목표) '24년 가족돌봄 2,400명, 고립은둔청년 960명 발굴·지원

□ (사업기간) '24년 4월 ~ '25년 12월

※ '25년 공모 미시행, '24년 선발지역 사업 연속 이행(기관 및 인력 승계)

□ ('24년 예산) 국비 3,403백만원 / 자치단체보조 (서울 50%, 기타 70%)

○ (가족돌봄) 20.9억 원 (서울 4.0억 / 타시도 5.6억 지원)

○ (고립은둔) 13.1억 원 (서울 2.5억 / 타시도 3.5억 지원)

(국비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액 | 인건비 | 사업비 | 운영비 |
|----------|-------|-----------------------|--------------------------------------|-----------------------|
| 가족 돌봄 | 2,094 | 435 (총 24명분, 10개월) | 1,591 (자기돌봄비 1,248: 총 960명분 / 기타) | 68 (서울 13, 기타 18) |
| 고립 은둔 | 1,309 | 650 (총 32명분, 10개월) | 413 (정서회복, 공동생활 등 맞춤형 프로그램) | 244 (서울 46, 기타 66) |

○ (청년인턴 파견) 352백만원

- 월 210만원 x 24명(시도당 6명) x 최대 7개월, 국비 100%

※ 실시 지자체 선정 후, 복지부에서 채용(4월) → 해당시도 민간수행기관 파견(6월~)

2 사업별 주요 프로그램

< 1. 가족돌봄청년 지원(새로운 복지 전달체계) >

□ (자기돌봄비) 지급·관리 구체적 방안 별도 안내

- 대상자 정의, 선정기준, 지급절차, 관리체계 등 마련

◆ (기본방향) 가족돌봄청년 정의는 향후 별도 정책 카테고리화를 통한 보장성 확대 관점에서 접근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속 추진)

- 복지대상자로서 가족돌봄청년을 별도 카테고리화하여, 간병·요양돌봄 등 기존 서비스 우선·특례 대상자로 지원 확대 추진
- 다만, 현금수당인 자기돌봄비는 중장기 재정제약 하, 정확한 규모예측 및 객관적 지급기준 마련 필요 방향

□ (가족돌봄청년 정책 카테고리화*) 공적서비스 보장성 확대

* 복지부에서 제시한 가족돌봄청년 정의 기준

- (부양가족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중대수술 후 퇴원환자 간병서비스 등 선정 편의, 시간 확대 등 추진 (복지부 내 협의)
- (일상돌봄서비스 우선 연계) 중대수술 후 퇴원환자 중심으로 발굴 후 적극 연계 추진 ('24.7월 일상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 추진 중)
- (대학생, 초중고생 대상 민간장학금 연계)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시 우선 연계될 수 있도록 선도사례 발굴 ('24년, 우리은행 인턴십 프로그램 등)

□ 자체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자조모임 운영*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나 지자체 여건 상황 등에 따라 다른 효율적 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

* 자립준비청년 '바람개비 서포터즈' 모델 등 (참고)

*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무료 도시락 배달을 (주로 1인가구 노인 대상) 가족돌봄 청년가구로 확대 (식사준비 등 부담을 낮추고, 미래준비 도모)

[붙임 2]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창열 의원)

| | |
|----------|-----|
| 의안 번호 | 332 |
|----------|-----|

발의연월일: 2024년 10월 8일

발 의 자: 이창열 의원

찬 성 자: 남진삼, 심현정, 이은미 의원

1. 제안이유

우리군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안 제4조 관련)
-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관련)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관련)
- 업무 등의 위탁(안 제8조 관련)
- 홍보 및 교육 (안 제9조 관련)
-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10조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4. 9. 19. ~ 10. 8.(20일간), 입법예고 중.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4. 8. 5. ~ 8. 12. 아래표 참조.

| | | | |
|-------------|---|-------------|---|
| 조례안 (원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 을 말한다. | | |
| 집행부 의견 | 인재육성과 | 9세이상 24세이하 | - 지원대상 연령 범위가 광범위하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 구분 어려움 |
| | 복지정책과 | 9세이상 24세이하 | - 지원대상 연령 범위 광범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목적, 방향, 방법 구분 어려움 |
| | 가족복지과 | 15세이상 49세이하 | - 15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아동 등 선정하여 이미 지원 중임 -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연령으로 조정 필요 |
| | 경제과 | 9세이상 34세이하 | - 지원대상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 각 기본법에 따른 연령 기준 적용 *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 9세이상 24세이하인 사람 * 「청년기본법」상 청년 :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 검토 결과 |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돌봄과 학업 및 취업 준비 등을 병행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사람 으로 법정 청소년의 나이로 정하고자 함 | | |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등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평창군민,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 |
|-----|-----------------|
| 작성자 |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
| 연락처 | (033) 330 -2504 |